

2007. 7. .

2006年度 地方公企業  
上・下水道事業特別會計 決算書(要約)

上下水道事業所

# 2006年度 地方公企業 上·下水道事業特別會計 決算書(要約)

- 지방공기업의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행위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및 감사 결과임.

## ■ 推 進 背 景

-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
- 지방공기업 자산 및 채무관리의 효율성, 적정성 파악
-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책임해제가 됨

## ■ 關 聯 根 據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내 용
  -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 결산서 작성  
→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회계감사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같음
  - 결산공시 : 결산승인 5일 이내

## ■ 推 進 日 程

- 결산서 작성 및 제출 : 2007. 1월~2월
- 공인회계사 지정 및 계약체결 : 2007. 2월
- 회 계 감 사 실 시 : 2007. 3월
- 결산검사(회계감사로 같음) 및 승인 : 2007. 6월

## ■ 決 算 內 容

- 사업보고서
- 예산결산보고서 : 사업예산결산, 자본예산결산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자금운용계산서
  - 재무제표 주석
- 결산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 公 認 會 計 士 指 定

-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 지정대상 : 손영우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손 영 우(창원시 소재)
-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 병행 실시

#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 ○ 예산결산

- 세입예산 : 7,599,684,410원
- 세출예산 : 4,914,308,680원

### ○ 자금결산

- 전기이월액 : 2,755,145,430원
- 수 입 : 4,797,318,930원
- 지 출 : 4,914,308,680원
- 차기 이월 : 2,638,155,680원

### ○ 대차대조

- 자산총계 : 31,224,835,160원
- 부채합계 : 3,506,997,417원
- 자본합계 : 27,717,837,743원

### ○ 손익계산서

- 영업수익 : 2,157,141,080원
- 영업비용 : 2,929,666,232원
- 영업외수익 : 2,374,377,660원
- 영업외비용 : 290,023,407원
- 당기순이익 : 1,311,829,101원

### ○ 총괄원가

- 생산원가 : 1,275원
- 평균단가 : 608원(47.6%)
- 결 함 액 : 2,444,431천원

## ●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 별첨1 (P6 ~ P9)

## ●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음.
  - 복식부기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산화된 회계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야 할것임
- 상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의 47.6%에 불과하여, 인상요인도 109%에 달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요금의 인상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 ● 지적사항 개선방안

-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  
회계직 공무원의 공기업회계에 대한 회계관리, 예산관리, 자산관리, 채무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 채용 및 지속적인 교육
-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 가. 상수도 요금의 실태
    - 현재 적용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02년말 기준의 총괄원가계산에 의해 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적용된 요금요율표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보호 등을 위해 동결하여 운용하고 있고
    - 2005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용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요금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톤당 생산원가의 47.6%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나. 상수도 현황

### - 일반현황

총인구	급수인구	시설용량 (m <sup>3</sup> /1일)	생 산 량 (m <sup>3</sup> /1일)	공 급 량 (m <sup>3</sup> /1일)	1인1일 급수량(ℓ)	급수전수 (전)	비 고
63,917	39,889	23,300	15,586	9,218	390	6,384	

### - 상수도 업종별 전수 및 요금 현황(2006년)

업 종	급수전수(전)	조정량(천톤)	부과액(백만원)	비 고
계	6,384	3,364	2,046	
가 정 용	4,408	1,957	1,040	
일 반 용	1,956	1,117	839	
욕 탕 용	19	17	13	
산 업 용	1	272	154	

### - 도내 상수도요금 비교표

지 자 체	생산원가(원/m <sup>3</sup> )	평균단가(원/m <sup>3</sup> )	현실화율(%)	비 고
<b>거 창 군</b>	<b>1,275</b>	<b>608</b>	<b>47.6</b>	
산 청 군	1,633	682	41.8	
합 천 군	989	656	66.3	
창 녕 군	1,437	903	62	
통 영 시	1,104	912	82	
밀 양 시	1,110	667	60	
양 산 시	1,010	776	76	

## 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 공기업운영의 독립체산제 확립 기반마련과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 현실화를 위하여는 인상이 불가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및 주민여론등을 감안하고, 타시군과의 비교등으로 점차적으로 인상 계획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별첨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내용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회계처리	1.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있음
	2.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적정하게 작성. 비치
	2-1.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 되었는지?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
	3.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전산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다소 미숙함
예산관리	4.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세입예산:징수결정시점 -세출예산:채무확정시점
	5.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계상하고있음
	6.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해당사항없음
	7.예산의 이월(건설계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적법하게 이월 -사고이월 : 27건 897,758천원 -건설계량이월 : 14건 1,310,189천원
	8.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
	8-1.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없었음
	8-2.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집행하지 않음
	8-3.예산편성시 당기에정 대차대조표, 전기예정 대차대조표, 전기예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작성하지 않음
8-4.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을 실행하고 있는가?	향후 실시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재무제표 분 석	9.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감사보고서 분석내역참조 (P22)
	10.전기대차대조표와 당기대차대조표를 비교분석 할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감사보고서 분석내역참조 (P23)
	11.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 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차이 있음 - 감사보고서 참조
총괄원가 분 석	12.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 총괄원가 : 1,275원 - 평균요금 : 608원
	13.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는가?	현액 : 2,690,153원
자금 및 미수금관리	14.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단기에탁 금융상품 예치
	15.세입세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방법은?	적정하게 관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16.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 관리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음
	17.3개월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 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이쓴가?	회수대책을 적정하게 수립 시행
	18.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적정하게 수입 운영
저 장 품 관 리	19.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 되고 있는가?	수시로 수립운영
	20.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 처리는?	당기매각없음
	21.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제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22.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비치
	22-1.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	전액 재산매각수입에 계상
	23.저장품 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 그절차는 적정한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계리
	24.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수시로 재고실사 이행
	25.현장으로 직물되는 자재는 적정계리하고 있는가?	당기중 환입품 없음
26.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진부화된 저장품 없음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설비자산 관 리	27.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에 계상
	27-1.차입금 지급이자를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처리하고 있는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
	28.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계정에 계상하였는지?	계리하고 있음
	29.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되고 있는가?	적정하게 처리
	30.감가상각은 계속성 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내용년수에 의해 정액법으로 상각
	31.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효율적 관리
	31-1.상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전산도면에 의해 적정관리
채무관리	32.고정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중에서 익년도중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유동자산으로 대체되어 있는가?	2006년 상환예정 부채는 302,400천원임
	33.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34.공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하게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35.차관 등 고정부채 상환지연으로 연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36.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 되었는가?	해당사항 없음
	36-1.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사항 없음
	37.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부채는 전액 재무제표에 의해 계상되어 있음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기타회계 관 리	38.급수공사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자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적정하게 회계처리
	39.비정상적인 계정과목과 거래과목은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40.사업년도완료일 이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할 사항은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경영관리	41.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명확히 구분함
	42.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특별한점 없음
	43.영업비용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등 절감요소는 없는가?	특별한점 없음
	44.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예정
	45.공기업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별첨참고
	46.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적정함
	47.매출원가는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적정함
	48.기금융자 상환대장은 정확히 정리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49.기금융자는 적정하게 융자, 회수는 적기에 이루어 지는가?	해당상 없음
	50.발생이자와 미수수익은 정확하게 계상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계산됨

##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 ○ 예산결산

- 세입예산 : 17,435,298,390원
- 세출예산 : 13,556,992,070원

#### ○ 자금결산

- 전기이월액 : 4,016,767,390원
- 수 입 : 13,264,204,940원
- 지 출 : 13,556,992,070원
- 차기 이월 : 3,813,980,260원

#### ○ 대차대조

- 자산총계 : 50,038,735,856원
- 부채합계 : 189,600,000원
- 자본합계 : 49,849,135,856원

#### ○ 손익계산서

- 영업수익 : 512,526,560원
- 영업비용 : 3,296,402,683원
- 영업외수익 : 1,932,861,720원
- 영업외비용 : 10,096,882원
- 당기순손실 : 861,111,285원

#### ○ 총괄원가

- 생산원가 : 1,416원
- 평균단가 : 117원(8.3%)
- 결 함 액 : 5,346,057천원

### ●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 별첨2 (P13 ~ P16)

## ●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음.
  - 복식부기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산화된 회계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야 할것임
- 하수도요금은 총괄원가의 8.3%에 불과하여, 인상요인도 1,107%에 달하고 있음.  
( 1인당 : 연간 하수수익 11,033원, 고정자산금액 894,603원 )
  - 향후 지속적인 요금의 인상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 ● 지적사항 개선방안

-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  
회계직 공무원의 공기업회계에 대한 회계관리, 예산관리, 자산관리, 채무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 채용 및 지속적인 교육
-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 가. 하수도 요금의 실태
    - 현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은 2002년말 기준의 총괄원가계산에 의해 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 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지금까지 동결하여 운용하고 있고
    - 2005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용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요금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톤당 생산 원가의 8%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나. 하수도 현황

### - 일반현황

총인구	하수인구	시설용량 (m <sup>3</sup> /1일)	발생량 (m <sup>3</sup> /1일)	처리량 (m <sup>3</sup> /1일)	하수전수 (전)	비고
63,917	43,862	19,500	24,622	24,622	5,877	

### - 하수도 업종별 전수 및 요금 현황(2006년)

업종	하수전수(전)	조정량(천톤)	부과액(천원)	비고
계	5,877	4,114	482,600	
가정용	3,847	1,951	181,355	
일반용	1,978	1,353	204,185	
욕탕용	39	315	47,045	
산업용	13	495	50,015	

### - 도내 하수도요금 비교표

지자체	생산원가(원/m <sup>3</sup> )	평균단가(원/m <sup>3</sup> )	현실화율(%)	비고
<b>거창군</b>	<b>1,416</b>	<b>117</b>	<b>8.3</b>	
함양군	246	158	64	
합천군	151	133	88	
남해군	787	72	9	
마산시	512	173	34	
통영시	1,190	161	14	
양산시	725	97	13	

## 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 공기업운영의 독립체산제 확립 기반마련과 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 현실화를 위하여는 인상이 불가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및 주민여론등을 감안하고 타시군과의 비교등으로 점차적으로 인상 계획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별첨2]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내용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회계처리	1.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있음
	2.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적정하게 작성. 비치
	2-1.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 되었는지?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
	3.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전산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다소 미숙함
예산관리	4.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세입예산 : 징수결정시점 -세출예산 : 채무확정시점
	5.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계상하고있음
	6.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해당사항없음
	7.예산의 이월(건설계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적법하게 이월 -사고이월 : 5건 55,073,140천원 -건설계량이월 : 6건 1,630,492천원 - 계속비 : 1건 1,306,250천원
	8.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
	8-1.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없었음
	8-2.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집행하지 않음
	8-3.예산편성시 당기예정 대차대조표, 전기예정 대차대조표, 전기예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작성하지 않음
8-4.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을 실행하고 있는가?	향후 실시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재무제표 분 석	9.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감사보고서 분석내역 참조 (P22)
	10.전기대차대조표와 당기대차대조표를 비교분석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감사보고서 분석내역 참조 (P23)
	11.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 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감사보고서 분석내역 참조 (P24)
총괄원가 분 석	12.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총괄원가 :1,416원 -평균요금 : 117원
	13.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는가?	현액 : 3,813,980원
자금 및 미수금관리	14.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관리 -정기예금에 예치
	15.세입세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방법은?	해당사항 없음
	16.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 관리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음
	17.3개월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 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이쓴가?	회수대책을 적정하게 수립 시행
	18.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적정하게 수립 운영
저 장 품 관 리	19.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수시로 수립운영
	20.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 처리는?	당기매각없음
	21.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22.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비치
	22-1.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	전액 재산매각수입에 계상
	23.저장품 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 그 절차는 적정한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계리
	24.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수시로 재고실사 이행
	25.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계리하고 있는가?	당기중 환입품 없음
26.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진부화된 저장품 없음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설비자산 관 리	27.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에 계상
	27-1.차입금 지급이자를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처리하고 있는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
	28.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계정에 계상하였는지?	계리하고 있음
	29.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되고 있는가?	적정하게 처리
	30.감가상각은 계속성 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내용년수에 의해 정액법으로 상각
	31.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
	31-1.상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전산도면에 의해 적정관리
채무관리	32.고정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중에서 익년도중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유동자산으로 대체되어 있는가?	2006년 상환예정부채 : 31,600천원
	33.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34.공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35.차관 등 고정부채 상환지연으로 연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36.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 되었는가?	해당사항 없음
	36-1.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 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사항 없음
	37.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 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부채는 전액 재무제표에 의해 계상되어 있음
기타회계 관 리	38.급수공사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자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39.비정상적인 계정과목과 거래과목은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40.사업년도완료일 이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를 한 사항은 없는가?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착 안 사 항	감 사 결 과
경영관리	41.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명확히 구분함
	42.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특별한점 없음
	43. 영업비용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등 절감요소는 없는가?	특별한점 없음
	44.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 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45.공기업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 방안은?	별첨참고
	46.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적정함
	47.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가?	적정함
	48.기금융자,상환대장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49.기금의 용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용자 되고 있으며, 회수는 적기에 이루어 지는가?	해당사항 없음
	50.발생이자와 미수수익은 정확하게 계상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계상